

정책 2007-17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2006. 04~2007. 03)

김 승 권
박세경 황옥경
장보현 이진우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머 리 말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아동은 권리주체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보호대상자로서, 부모의 대리만족 수단으로서, 그리고 미래자원으로서 인식되는 경향이었음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1990년 9월 2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당사국이 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권리에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협약에 비준한 모든 당사국은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에는 매 5년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동권리의 증진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다. 이와 같이 모든 협약당사국에 주어진 국가보고서를 제출의무는 국제적인 차원의 아동권리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 세계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이 행복한 세상'의 달성이 조기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아동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에 상관없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조건들을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아동에게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아동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보겠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은 국가의 아동관련 정책 및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 제안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며, 아동권리 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확인, 그리고 활용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아동권리모니터링은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옹호활동에서부터 아동권리 침해 사례의 보호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아동권리 및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의하여 당 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정책의 주요 분야별 전

문가와 다양한 특성의 아동으로 구성된 26명의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둘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동 위원회 관계자와 민간 아동전문가들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한 효율성 있는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유엔과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전달체계는 아닐지라도 최초로 설치된 모니터링 센터와 처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26명의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본 사업은 당 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장인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외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시에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16명의 아동권리옴부즈맨과 10명의 아동권리옴부즈키드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한 ‘아동의 매매,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선택의정서의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련부처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사업의 원내 검토자인 당원의 조애저 부연구위원과 김유경 부연구위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결과가 한국아동의 권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2008년 12월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제3차 및 제4차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제1부 서론]

요약	11
제1장 서론	6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0
제2장 아동권리의 이론적 배경과 모니터링	74
제1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모니터링	74
제2절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개념 및 체계	75
제3절 아동옴부즈맨의 역할 및 요건	84
제4절 국내·외 아동권리 모니터링 연구 및 현황	89
제5절 아동권리의 이론적 배경과 모니터링의 시사점	102

[제2부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 및 실태]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동향	109
제1절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점검	109
제2절 아동권리국가보고서 분석	112
제3절 아동권리정책 분석	114
제4절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 선정 및 개발	117
제5절 한국 아동권리 정책동향의 시사점	121

제4장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본 한국 아동권리 실태 분석	123
제1절 일반이행조치	123
제2절 아동의 정의	131
제3절 일반원칙	131
제4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137
제5절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41
제6절 기초보건과 복지	150
제7절 교육	159
제8절 특별보호조치	164

[제3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 및 선택의정서 보고]

제5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73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설치 및 운영	173
제2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및 활동	236
제3절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247
제4절 모니터링 종합 및 정책제언	257
제6장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260
제1절 ‘아동의 매매,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260
제2절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280
제7장 종합논의 및 제언	290
참고문헌	293
부록	299

표 목 차

〈표 2- 1〉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범위 및 실천계획수립	81
〈표 2- 2〉 주요국가의 아동옴부즈맨 설치 현황	93
〈표 4-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예산현황	150
〈표 4- 2〉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157
〈표 4- 3〉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157
〈표 4- 4〉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158
〈표 5- 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현황	173
〈표 5- 2〉 심의기관에 따른 대상매체물	178
〈표 5- 3〉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및 방법	179
〈표 5- 4〉 아르바이트 경험	180
〈표 5- 5〉 아르바이트 관련 인권침해 현황	181
〈표 5- 6〉 외부인사의 교육활동 참여	183
〈표 5- 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8대 기본원칙(4-3-1 모델)	195
〈표 5- 8〉 연도별 1391 상담신고 건수	202
〈표 5- 9〉 연도별 신고자 유형	203
〈표 5-10〉 아동학대 사례유형	205
〈표 5-11〉 아동학대 발생장소	207
〈표 5-12〉 아동학대 발생빈도	208
〈표 5-13〉 피해아동 연령	208
〈표 5-14〉 피해아동 가족유형	209
〈표 5-15〉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11
〈표 5-16〉 연간 수업시간 수	223
〈표 5-17〉 학생회와 학교 당국의 주요 권한에 관한 유형 비교	235
〈표 5-18〉 옴부즈퍼슨 명단	237

〈표 5-19〉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제출 현황	238
〈표 5-20〉	센터와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만족도	249
〈표 5-21〉	옴부즈맨 구성의 적정성	250
〈표 5-22〉	적당한 옴부즈맨 전체회의 횟수	251
〈표 5-23〉	활동보고서 외의 모니터링 방법	251
〈표 5-24〉	향후 옴부즈맨 활동에 관한 과제	252
〈표 5-25〉	옴부즈퍼슨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252
〈표 5-26〉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의 상설기구화	253
〈표 5-27〉	옴부즈키드 활동에 대한 만족도	254
〈표 5-28〉	옴부즈키드 활동의 즐거움	254
〈표 5-29〉	옴부즈키드 활동 참여 이유	254
〈표 6- 1〉	아동보호 관련법의 연령기준	263
〈표 6- 2〉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2005)	263
〈표 6- 3〉	입양아동 현황	264
〈표 6- 4〉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빈도(2005)	265
〈표 6-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피해자 규모	265
〈표 6- 6〉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265
〈표 6- 7〉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연령별 현황	266
〈표 6-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범 단속실적	266
〈표 6- 9〉	청소년 성보호 관련 행위별 처벌규정	271
〈표 6-10〉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추진 경과	275
〈표 6-11〉	병역 유형별 개념	283
〈표 6-12〉	병역 유형별 연령분포	283
〈표 6-13〉	2006년 육군 자원입대자 현황	284
〈표 6-14〉	육군사관학교의 교과과정	286
〈표 6-15〉	공군사관학교의 교과과정	286

그림 목 차

[그림 1-1]	아동권리관련 주요 구성요소 간 관계	72
[그림 1-2]	연구 추진도	72
[그림 5-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업무추진 체계도	176
[그림 5-2]	1391 상담신고 건수: 2005년	202
[그림 5-3]	1391 상담신고 학대신고자 유형	204
[그림 5-4]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206
[그림 5-5]	학대피해아동 연령	209
[그림 5-6]	피해아동 가족유형	210
[그림 6-1]	YP 프로그램의 개념도	269
[그림 6-2]	연령별 병역의무 대상	282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한국정부는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해 2008년 3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음.
 - 보고서는 협약의 조항에 나타난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특별보호조치 등 8개의 영역(Clusters)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 연구의 목적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있음.
 - 즉,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점검기능을 극대화하고, 아동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아동권리 및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임.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사업의 수행단계

- 첫 단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 관련 활동을 점검함.
 - 정부정책을 분석함.
 -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며, 필요시에는 아동의 욕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함.
 - 아동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선발하여 위촉함.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해 유엔에 제출하여야 할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함.
- 모니터링의 수행은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중심이 되어 위촉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의해 수행되며,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함.
-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함.

2. 연구방법

- 아동권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함.
- 아동권리관련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며, 아동권리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함.
- 아동권리 관련 국내의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이에는 아동정책, 아동정보 등 아동권리관련 자료가 다양하게 활용됨.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개소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함.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동으로 구성된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전달체계를 구축함.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운영함.
- 옴부즈퍼슨의 운영방법은 매월 말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에 제출토록 함.

-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 전문가에는 아동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아동 관련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전문가, 아동학자 등이 포함됨.

제2장 아동권리의 이론적 배경과 모니터링

제1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모니터링

□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 보호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권리증진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적 ‘협약’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은 당사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협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협약이 정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협약 제44조에 의하여 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됨.

□ 모니터링

-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국제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임.
- 모니터링은 이러한 강제적 준수 의무를 갖고 있는 협약의 비준 국가들에서 아동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임.

제2절 아동권리모니터링의 개념 및 체계

1. 아동권리모니터링의 개념

□ 아동권리 모니터링

- 국가의 아동관련 정책 및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 그리고 제

안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며, 아동권리 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확인, 그리고 활용 등이 모두 포함됨.

- 아동권리모니터링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사건의 관찰, 특정 장소의 방문, 그리고 정보의 확보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당국과 토론 등을 할 수 있음.
-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은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교사, 사회사업가, 경찰 등 아동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협약 내용을 교육하는 ‘권리이해’의 단계가 있음.
- 이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일차적인 단계로 권리 이행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의 단계보다 앞선 활동임.
-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음.
- 이는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모니터링(needs-based approach)과 아동에 대한 건강보호, 교육환경과 안전한 환경의 제공 등과 같은 아동권리에 근거한 모니터링(rights-based approach)으로 구분됨.

2. 아동권리모니터링의 효과

□ 아동권리모니터링의 효과

-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조정과 견제, 그리고 조화를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아동정책이 개발될 수 있음.
- 아동권리모니터링을 통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가 가능함.
 - 우리사회가 아동들이 성장하기에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타당성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음.
- 아동권리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음.
 - 실제로 아동옹호 활동이나 지역사회를 모니터링 하다 보면 새로운 지식이 나오며, 이러한 지식은 현재 정책이나 실행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3.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체계 및 활동

□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체계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국이 실천해야 하는 아동권리 내용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범주의 준거로 사용되어야 함.
 -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일차적인 준거는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에 따른 각국의 아동권리지표임.
 -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문서와 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등이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음.
- 각국은 협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해야 함.
 - 아동권리 지표의 개발은 아동상황의 파악과 모니터링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으로, 아동권리지표는 아동의 권리보호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임.
- 개발된 아동권리지표에 따라 아동관련 법령, 정책, 규정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함.
- 아동권리 모니터링은 아동권리지표에서 제시된 영역들에 대한 생산된 통계자료를 분석함.
 - 아동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위험상황에 있거나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사례 분석방법을 통해 아동권리 침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

- 모니터링 범위
 -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추적, 아동관련 데이터 산출, 관리, 아동관련 활동과 예산 결과추적 및 프로그램평가, 아동관련 활동과 예산결과를 재원 지원처에 보고,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사정,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평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 미전달 상태 파악 등임.

— 실천계획 수립

- 모니터링 동기 유발, 관계부처 간 효과적, 협력적 체계구축, 정치적 의지, 재정적 후원 유발, 자료수집, 옹호전략 개선 및 증진

4. 아동권리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필요성

- 일차적으로는 아동들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법체계 내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으며, 스스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데서 제기됨.
- 세계 각국의 모니터링 구조나 체제를 일원화하기 어렵다는 아동권리의 특성상 자국에 맞는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아동옴부즈맨

- 아동권리협약을 실행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되거나 아동 옴부즈맨 제도가 될 것임.

제3절 아동옴부즈맨의 역할 및 요건

1. 아동옴부즈맨의 역할

사례조사

- 옴부즈맨들은 아동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대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옴부즈맨의 사례조사는 보편적인 역할임.
- 옴부즈맨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여부와는 달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설비를 이용하고 사례와 관련된 기록과 다른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모든 옴부즈맨들에게 부여되어야 함.

□ 법과 정책 개발 촉구

- 옴부즈맨이 아동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실패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실패에 대해 주장할 조치를 제안하여야 함.
 -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리 옹호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몇몇 국가의 법이 실제로 제정된 경우가 있었음.

□ 아동권리 관련 연구 수행

- 옴부즈맨은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함.
 - 아울러 협약의 내용과 아동의 생활환경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아동권리 인식 증진 활동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에는, ‘당사국은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아동권리에 대해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옴부즈 활동의 중심 과제는 아동 권리와 그 권리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것임.

2. 아동옴부즈맨의 요건

□ 독립성 확보

- 옴부즈맨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주어져야 함.
 - 독립적인 옴부즈맨은 아동에게 매우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에 관한 정부정책에 비판을 가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함.

아동참여와 높은 접근성

- 아동옴부즈 사무국은 최소한 두 개의 부서로 구성되는데, 이중 하나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부서임.
- 아동옴부즈맨은 아동의 견해가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적 권한부여

- 옴부즈맨이 아동권리를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을 포함한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필요한 인력의 확보

- 옴부즈 사무소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람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평가받게 되면 옴부즈 사무국의 직원들이 늘고, 다루어야 할 사례도 많아짐.

NGO와 옴부즈맨의 관계

- 대부분의 국가에서 NGO들은 옴부즈기구 설립 추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

제4절 국내·외 아동권리 모니터링 연구 및 현황

1. 국내 아동권리모니터링 연구

아동권리모니터링 연구

-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연구는 모니터링의 개념, 내용, 체계 등의 모니터링의 개념을 이해하는 연구와 아동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연구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 모니터링의 개념과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는 외국의 운영사례를 통해서 그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방안을 다루었음.

- 아동권리모니터링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2002년 한국아동권리학회가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동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들 및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모니터링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실행 체제로서의 NGO와 아동에 의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였음.
-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각 국의 모니터링 체제 분석을 주제로 외국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운영체제를 통해 국내 상설모니터링 기구의 설치 방안을 모색하였음.
-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2004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연구(보건복지부·세이브더칠드런, 2004)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과 문제점을 8개의 클러스터 별로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04)는 아동이 성장하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하였음.
 - 대학 재학생과, 교사, 부모, 그리고 아동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교육하였고, 이들은 각각 정해진 모니터링 영역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음.
-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2005)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였음.
 - 동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아동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보고서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음.

2. 외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현황

□ 영국의 잉글랜드 아동커미셔너

- 영국정부는 2003년 『아동커미셔너(Children's Rights Commissioner)』를 공식적으로 탄생시켰음.
 - 『아동커미셔너(Children's Rights Commissioner)』는 NSPCC의 강력한 지원 아래 창설

되었고,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독립기구임.

- 영국 내 130여개 아동권리 관련기관들이 아동커미셔너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노르웨이 아동옴부즈맨 사례

- 노르웨이는 아동 옴부즈맨 제도를 시작한 최초의 국가로 옴부즈맨에게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2004년과 2005년 노르웨이 옴부즈의 주요 활동목표는 다음과 같음.
 - 노르웨이 아동의 아동기를 보호하고 개선시킴.
 - 유치원과 학교 등 모든 환경을 개선함.
 -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를 제공하고 아동의 참여를 강화함.
 - 협약이 노르웨이 법률에 완전히 편입됨에 따라 지역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권장하는 것임.

□ 일본의 아동권리모니터링 현황

- 일본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 점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청소년대책추진회의’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조정기구로 보고하고 있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책조정기구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권리조례의 제정 및 아동옴부즈퍼슨의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가와사끼시(市)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방자치 정부 중 최초로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하였음.
- 일본 지자체들은 각 지자체가 처한 아동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조례의 명칭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조례’, ‘옴부즈퍼슨조례’, ‘아동권리옹호위원회 조례’ 등이 있음.
- 일본은 아동옴부즈 외에 ‘아동권리전문위원’이 아동권리 모니터링활동을 함.
 - 아동권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의 장과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연계를 유지해야 함.
 - 아울러 전문위원은 학교, 그 외의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기관과 연계하여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제5절 아동권리의 이론적 배경과 모니터링의 시사점

□ 시사점

-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기구의 신설이 요구됨.
 - 각 지역의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상시 옴부즈 기구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옴부즈맨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법에 아동옴부즈 서비스 제도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임.
-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해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커미셔너 혹은 아동옴부즈맨의 임명과 기능,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는 중요함.
-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해 옴부즈퍼슨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함.
 - 옴부즈맨은 필요한 영역에 대한 행정적인 권한 부여 및 독립성 보장
 - 사례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조사권 부여
 - 아동과 관련된 각 부처나 기구는 옴부즈맨이 요청한 자료 제공
 -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법에 제소할 권리
 - 관련자 증언 명령과 요청한 도움에의 경찰 협조의무
 - 정책실행의 평가와 법 제·개정 추진
 - 권리이해를 위한 각종 권리교육 실시 등
- 상시 근무하는 옴부즈퍼슨의 배치가 요구됨.
 - 아동권리 옹호활동 및 권리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부여하기 위해 상시 근무 가능한 옴부즈퍼슨이 임명되어야 할 것임.
-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아동들이 권리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절차가 관료적이지 않고, 자료나 정

보가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하며, 아동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채널을 활용해야 함.

-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의 운영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
 - 옴부즈퍼슨의 활동내용과 역할 그리고 권한, 사무국 직원의 수 등에 따라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옴부즈 기구는 무엇보다도 아동보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기존의 기관들과 업무상 충돌하지 않아야 함.
 - NGO단체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고 있을 때 NGO의 옴부즈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는 NGO의 적극적인 옴부즈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동향

제1절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점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사항
-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특히,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비해 회의 개최 횟수가 적다는 것임.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들의 임무 및 권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무 및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확인을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에 관한 개별 정책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

제2절 아동권리국가보고서의 분석

□ 1994년의 1차 국가보고서

- 협약의 이행정도에 대하여 단순히 관련 법령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음.
 - 이로 인해 1차 보고서는 협약이행 현황의 개선을 위한 명확한 목표의 제시가 부족하고, 결국 협약 이행을 위한 사법 및 행정절차의 보완과 예산편성 방안 역시 제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1999년의 제2차 국가보고서

- 내용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더욱 풍부한 법규와 통계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제시되는 등 1차보고서 보다는 충실한 내용이 제시되었음.
 - 그러나 권리이행의 포괄적인 파악과 그 이행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사회적 배경 파악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 더 나아가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민간의 참여와 연계는 1차, 2차 보고서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2008년에 3차 국가보고서를 작성

- 보고서는 최초보고서가 2년, 이후의 보고서는 5년 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2008년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는 3차 보고서가 아닌, 3차 및 4차 통합 보고서가 됨.
- 따라서 앞으로 제출하게 될 보고서는 2차보고서 이후의 정책동향을 중복 없이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의 이념 중에서 종전의 보고서에서 작성되지 못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함.

제3절 아동권리정책 분석

□ 최근의 아동과 관련한 정책

- 과거와는 달리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사업 전개도 가능해 졌음.
-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아동권리정책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제4절 아동권리모니터링 지표 선정 및 개발

□ 지표의 의미

- 모든 일의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임.
- 즉, 지표가 가지고 있는 목적 및 목표가 아동의 권리실현에 있다면 아동권리지표라 할 수 있는 것임.

□ 「한국의 아동지표」

- 아동권리학회(1998)에서 아동 또는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최초로 개발된 지표라 할 수

있음.

- 이 지표는 우리나라 아동의 고유한 모습과 상황을 적절하게 나타내며,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미국의 아동복지지표를 답습한 분류로 인하여 합리성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표지표가 영역별 동수인 3개 지표 배분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는 등의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음.

□ 「청소년인권지표」

-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개발아동권리지표임.
 -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행 정도와 인권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 그러나 청소년인권지표개발 보다는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지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정의가 부족하고, 청소년인권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지표들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객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아동권리지표」

-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발한 아동권리지표임.
 - 이 지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타당성 있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한국의 아동지표」

- 2006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개발하였음.
 -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아동상황을 아동인구, 가족구조 및 생활, 건강, 아동빈곤, 사회적 보호, 안전, 교육 및 보육, 아동의 사회생활과 참여, 비행 및 이탈로 구분하여 현황과 통계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 「청소년인권지표」

- 2006년에 한국청소년개발원도 국제기준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의 일환으로 개발하였음.
- 이 지표는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과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인권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가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음.

□ 아동백서 40개 주요아동지표

-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 현행 통계체계가 아동권리 전반에 걸쳐 수집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마련하였음.

제5절 한국의 아동권리정책 동향의 시사점

□ 아동권리정책의 시사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과 개선방안을 지시하였음.
- 두 차례에 걸친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분석을 통한 3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참여의 의의와 작성과정에 대한 제언을 하였음.
- 중앙정부 중심의 아동권리정책이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아동권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 특히 지방정부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인 「가와사끼시(市)아동권리위원회」를 소개하였음.
-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지표, 아동권리지표 개발에서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세부 권리영역과 그에 따른 개별 정책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선정 및 개발에 대한 제언을 하였음.

제4장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본 한국 아동권리 실태 분석

제1절 일반이행조치

1 유보철회

□ 분리된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제9조2항)조항의 유보철회

— 정책이행 현황

- 정부는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될 수 있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007년 3월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시사점

- 정부는 2008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민법을 개정하여 자녀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입양허가제(제21조 가항)조항의 유보철회

— 정책이행 현황

- 2005년 4월 11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및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국내입양 우선정책의 강화, 해외입양아동 보호, 입양비용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아동의 의사표현권 보장과 해외입양의 사후관리, 헤이그협약 가입을 권고하였음.

— 시사점

- 신고에 의해 입양의 효력 발생을 명시하고 있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 제7조 1항을 정부의 허가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 상소권보장(제40조 제2항 나 호 (5)항)조항의 유보철회

— 정책이행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 하에서는 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음.

— 시사점

- 비상계엄 하에서는 18세 미만도 상소권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의 개정이 필요함.

2. 입법

- 협약의 조항과 원칙에 완전히 부응하지 않는 국내법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3. 정책조정기구의 설치와 공적모니터링 기구의 설치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음.

4.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관련 분야의 전문화

정책이행 현황

- 2007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에는 아동과 관련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소위원회의 설치도 되어 있지 않음.

시사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임.

5. 아동관련 자원의 배분

정책이행 현황

-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아동정책에는 2004년 7월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경

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립한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이 있음.

□ 시사점

- 예산의 책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아동 권리의 관점은 협약 이행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6. 아동권리에 대한 지표개발 및 통계수집

- 이와 관련한 정부의 이행노력과 성과는 본 보고서 제3장 제4절을 참조.

7. 시민사회와의 협력

□ 정책이행 현황

-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많은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약의 보급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활동은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시사점

- 정부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부처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 시민참여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8. 협약의 홍보와 교육

□ 정책이행 현황

- 정부의 인권에 관한 홍보와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등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음.

□ 시사점

-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인권교육법안은 아동의 권리 실현 뿐만이 아니라 인권존중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것임.

제2절 아동의 정의

1. 동일한 최저혼인연령

□ 정책이행 현황

- 현행 민법 제807조에서는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고 각기 다른 혼인가능연령을 두고 있음.

□ 시사점

- 나이에 의한 차별은 협약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 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함.

제3절 일반원칙

1. 협약의 일반원칙의 존중

□ 정책이행 현황

- 한국사회의 아동권리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였음.

□ 시사점

- 현재 운영 중인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모니터링 기능 확립과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음부즈퍼슨의 모니터링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즉, 관련예산과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마련하는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차별금지의 원칙과 이를 위한 홍보와 교육

□ 정책이행 현황

- 정부는 2006년 9월 27일 기존의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음.
- 또한 2007년 3월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음.

□ 시사점

-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규가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3. 아동견해에 대한 존중

□ 정책이행 현황

-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때에는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징계과정에서의 아동참여로 현행 초·중교육법 제18조 2항(학생의 징계)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정책이행 상황은 본 장의 1-8의 협약의 홍보와 교육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음.
- 아동영향평가로, 정책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협약의 이념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동실태·의식 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야 함.
- 아동견해의 존중을 위한 아동참여 활동임.

□ 시사점

- 아동의 의견존중은 아동참여의 시작임과 동시에 운영방법이며, 그 자체가 아동의 권리임.

제4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표현과 결사의 자유

□ 정책이행 현황

- 교육기본법 제5조 2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참여는 배제하고 있음.

□ 시사점

- 아동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관계법을 개정하고, 학교운영에 있어서 아동참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또한 관련제도나 정책과 더불어 아동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함.

2. 체벌

□ 정책이행 현황

- 체벌에 관한 관련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2년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발표하였으며, 예시안에는 체벌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음.

□ 시사점

- 학교교육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체벌을 금지할 수 있도록 체벌금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 내 체벌금지에 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함.

제5절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상담·지원제도 증대를 통한 그룹 홈과 위탁 양육 확장

□ 정책이행 현황

- 정부는 대리양육과 위탁가정보호의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2005년 7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직원의 자격기준, 설치기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시사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위탁가정 및 그룹 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 가정위탁제도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만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위탁가정 선정과 관련한 실행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을 현실화하여 아동 1인당 필요한 최소액을 정하고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위탁아동별로 차등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난 후, 사후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위탁부모 선정기관과 지방정부 관련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아동의 공공·민간 시설수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가정환경으로 재통합

□ 정책이행 현황

- 아동복지법 제3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사점

- 아동을 가능한 경우 가정환경으로 최대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에 아동복지시설의 정기적, 의무적 감사나 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3. 사회복지사의 수 확대 및 역량 강화

□ 정책이행 현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수는 2002년 69,323명에서 2003년 85,449명, 2004년 104,645명, 2005년 129,99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시사점

- 사회복지사의 질과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들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력배치 및 근로 조건을 위해 노력해야 함.

4. 헤이그협약의 비준 권고

□ 정책이행 현황

- 헤이그협약의 목적은 국제입양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국제법에 맞추어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

□ 시사점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입양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헤이그협약을 비준해야 함.
5. 아동학대·방임사건 진정을 접수, 감독,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가제도 수립을 위한 법령 개선 등의 조치 및 사법진행인원, 사회복지사, 검사 등에 대한 훈련 실시

□ 정책이행 현황

- 우리나라는 2001년에 아동학대와 방임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매년 꾸준히 신설하여 현재 강원, 전북 등을 비롯한 전국 4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시사점

- 아동학대 사례를 접수, 감독,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함.
6. 아동학대 피해자, 가해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 및 지원권고

□ 정책이행 현황

- 각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상담치료기관 등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아동학대 감소를 위해 아동 및 가족서비스를 제공함.

□ 시사점

- 현행 아동복지법의 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규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대 치료의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법제화해야 함.

7. 아동학대·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통계수집 체계 마련

정책이행 현황

- 현행 아동학대 관련 통계보고 체계는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사례현황 자료를 입력하고 10일까지 수정하여 신고건수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시사점

-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통계수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8. 양육비 지급 의무의 강제조치 권고

정책이행 현황

- 2006년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조달 방안 등을 담은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시사점

- 현실성 있는 양육비 지급을 위해 양육비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감독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제6절 기초보건과 복지

1. 기초보건

보건예산을 증대 및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빈곤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음.

- 또한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보호 아동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학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만들어주고 있음.
- CDA제도와 희망스타트사업이 장기적인 아동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이 요구됨.

□ 생후 6개월 간 모유단독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규범 채택

- 정책이행 현황
- 보건복지부는 모유수유이행을 위해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임산부를 위한 모자보건 수첩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모유권장위원회),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등 민간과 공동으로 2006년에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음.
- 시사점
 - 모유수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공공수유시설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수유여성이 고용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정책이행 현황
 -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정책이행 현황
 - 실제적인 휴가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HIV/AIDS, 성병, 10대 흡연과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건강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보건에 관한 연구 실시

- 정책이행 현황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차원에서 2006년에 담배 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15개교에서 실시하였음.

-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청소년에이즈예방홍보대사(Y.G.A.: Youth Goodwill Ambassador)를 양성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병 및 에이즈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주도하는 세대를 양성하고 있음.

— 시사점

- 아동·청소년의 보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청소년 보건 문제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일원적인 전달체계도 필요함.

2. 장애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조치

— 정책이행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슬로건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 하여 점진적으로 차별문화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

장애아동의 숫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실시하고, 장애아동의 교육수요, 교육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 평가

— 정책이행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주요 현황에 대한 ‘특수교육실태조사서’를 발표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수를 확충하고, 교원을 충원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 학교, 수련시설 등 공공건물과 장소에 대한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유치원, 초·중등, 대학교육에서 통합교육프로그램 확대

— 정책이행 현황

-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특수학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특수학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 시사점

-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통합·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제7절 교육

1. 공교육의 질적 향상

□ 정책이행 현황

—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강조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였음.

- 즉, 학교교육의 신뢰제고를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수업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였음.

□ 시사점

— 공교육의 질 향상은 현행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불안한 노동시장의 제고, 즉, 청년실업을 줄여나가는 경제정책 등과 맞물려 논의되어야 함.

2. 취학전교육과 중등교육비용감소 및 무상교육에 관한 전략 수립

□ 정책이행 현황

—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한 전략으로 2008년까지는 취학 전 만5세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의 일환으로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시사점

- 무상교육은 보육과 유아교육 뿐 만이 아니라, 고등학교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불평등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임.

3. 올바른 성에 대한 교육과 여아의 고등교육 기회보장

정책이행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모델을 위한 양성평등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성 차별적 교과내용을 개선하고, 지도 자료를 발간하였음.

시사점

- 양성평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학교 이외의 가정과 사회, 특히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관련 시설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의 제고

정책이행 현황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사점

- 정부는 관계공무원과 교육현장의 종사자들이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제8절 특별보호조치

1. 성착취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과 아동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 정책이행 현황

- 아동성착취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아동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함은 물론, 성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법무부는 2005년에 성구매 사범 초범자를 대상으로 ‘존 스쿨’이라고 하는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하였음.

□ 시사점

-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수행과 제도개선,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함.
 - 특히, 성착취 아동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현재 치료 가능한 전문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함.

2. 소년사법

□ 정책이행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는 일반형사사법과는 분리된 소년사법제도, 즉 소년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됨.

□ 시사점

- 소년사법에서의 검사선의주의는 개선되어야 하며, 소년사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인권에 대한 학습도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3. 이주노동자의 자녀

□ 정책이행 현황

- 보건복지부는 2000년 8월 외국인불법체류 근로자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건강관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내 초등학교 정식입학을 허용하였지만,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보내는 정도에서 허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정부는 협약의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의료부문 등의 기초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4. 선택의정서

□ 정책이행 현황

- 정부는 선택의정서의 비준 권고에 대해,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2004년 9월 24일에 비준하였음.

□ 시사점

- 정부는 무력분쟁 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노력해야 함.

제5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설치 및 운영

1.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설치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기능

-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능임.
 - 아동 관련 기관과 시설의 관련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DB를 구축하여 정보의 이용과 보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감시의 기능임.
 - 아동을 위한 국가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도록 함.
- 법, 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 촉구의 기능임.
 - 아동을 위한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실패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실패에 대해 주장할 조치를 제안함.
- 아동권리 관련연구의 착수 및 장려의 기능임.
 - 이는 협약과 아동의 실제적인 상황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장려하는 것임.
-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의 기능임.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와 그 권리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도록 함.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방식

-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의 체계화임.
 - 이를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존 홈페이지 내(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정보공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
- ombudsman의 활동을 점검함.
 - 위촉된 ombudsman과 ombudsman은 월별 활동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도록 함.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원칙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슈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정이슈의 선택 및 집중에 추진
 - 아동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아동노동에 대한 모니터링
- 2007년 상반기에는 아동유해환경과 아동노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보호 및 권리증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2007년 2월 말(예정) ombudsman 전체회의를 통해 센터와 ombudsman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

2. 선택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 아동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방송매체에서 여과 없이 보여 지는 성행위들을 통해 아동들은 왜곡된 성지식을 갖게 되며, 잔혹한 폭력행위 등은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현재 한국간행물위원회, 방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NGO 등에서 심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의 관점과 전문가의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유해환경의 범위와 등급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표시방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임.
-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법 제7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보도프로그램 제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 일반

주간신문(정치, 경제분야 제외), 특수주간신문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 제외), 잡지(정치,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 제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제4조제1항): 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중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생활정보지)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영 제4조제3항):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 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영 제4조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매체물의 성격이 2 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념

-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 심의기관 및 심의대상
 - 심의기관에 따른 대상매체물 제시
-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자 및 유해표시방법
 - 유해표시 의무자 및 방법 제시

□ 아동노동에 대한 모니터링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전체 13~19세 청소년의 38.1%는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교과 외 활동참여를 통한 성장 도모라는 동기 외에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음(한국의 아동지표, 2006).
-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노동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임금체불과 임금삭감에 대해 청소년들의 약 1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또한, 4.3%의 청소년들은 폭행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1.7%의 청소년들은 성적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주와 업소는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해당 업주, 심지어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 인권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및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현장방문

□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 2007년 1월 17일(수) 15:00~17:00
- 방문기관 :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 방문자 및 면담자

- 방문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김승권 소장, 움부즈키드 정호진 학생, 박종언 학생,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장보현 연구원 등 4인
- 면담자: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교감, 의무과장, 서무과장, 창업지원과장 이상 4인, 소년원 학생 5인

— 주요 방문내용

- 현황청취 및 소년원 관계자와의 면담
- 시설의 구조 및 주요 시설물 참관
- 소년원생들과의 면담
- 기념촬영

□ 일반현황

—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의 임무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특성화 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이 주요 임무

— 1942년 조선교정원 개원 후, 1990년 일반학교로 개편하고, 2000년 특성화학교 체제로 개편하여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로 개교

- 서무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창업지원과, 의무과의 5개과와 취업지원협의회, 창업보육심사위원회, 처우심사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의 4개 위원회의 기구가 운영중임.
- 총 부지 84,026㎡로, 청사, 생활관, 교실, 가정관, 기타 건물로 구성됨.

— 소년보호 직렬 61명을 비롯하여 의무, 전산, 건축, 식품위생, 별정, 기능, 계약 등의 총 87명의 직원이 근무함.

— 열린 소년보호행정 구현

- 학부모 일일 명예교사제, 신입학생 학부모 교육현장 참여, 방문인사의 교육시설 참관,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개방 등 교육환경의 개방화

— 친밀한 사제관계 형성을 위한 생활지도, 책 읽는 학교분위기 조성, 무의탁 퇴원학생 사회복귀지원 실명제 도입, 창업보육원 기능전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시설·장비 등 설치

□ 교육현황

- 교육인원은 총 211명으로 중등교육과정 114명, 고등교육과정 48명, 창업보육과정 16명, 신입학생 33명임.
- 교육목표
 -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교육 내실화
 - 변화와 체험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 안정된 사회복귀지원으로 재비행 방지
- 교육과정
 - 중학교 과정(3개 학급), 고등학교 과정(3개 학과), 창업보육과정(IT분야)으로 운영중임.
 - 일반학교와 학업연계기능 강화: 일반학교와 교사교환 수업 및 교원연수 등 교육기능 상호보완, 전·편입학, 검정고시를 통한 학업연계 및 진학지도
 - 실용위주의 맞춤형 교육
 - 체험학습위주의 인성교육
- 학생들의 자치 활동 지원
 - 힙합댄스, 축구 등 동아리활동 활성화
- 이웃사랑, 봉사활동
 -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강화
 - 가정관 및 문신제거 시술실 운영
 - 고봉장학회 설립·운영

□ 아동권리모니터링

- 동아리 활동
 - 현재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에는 축구동아리와 힙합동아리가 운영중임.
 - 동아리는 학생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고, 교과 외 시간은 자율시간으로 보내고 있음.
- 소년원 내 왕따 및 학교폭력 등 발생 여부에 대해 학생들은 발생할 수 없다고 대답함.
- 학생들은 소년원 내 급식에 대해 만족하다고 대답했으나, 식사 시간 이후 간식이 전

무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영양결핍이 우려됨.

-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음.
- 소년원 학생들은 대체로 소년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보호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심성훈련프로그램은 도입단계로 아직까지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수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학생들의 선택권 최대 존중
 - 의무교육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지만, 그 이상의 학생들은 학업과 직업훈련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창업보육원의 기능전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시설·장비 등 설치 및 학생들의 적극적 창업지원 가능(소년원 내 창업보육원은 세계 유일)
- 일부 학생은 소년원 퇴소 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감도 보임. 퇴소 전, 진로탐색과정과 사회적응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소년원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기간은 단기간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가 대부분을 보내는 곳은 청소년들의 가정임.
 - 그러나 학생들의 98%는 해체가정에서 성장하였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도 양질의 양육 및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음.

□ 정책제언

- 소년원생 가족에 대한 지원
 - 이들이 소년원 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6~18개월 이후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가정에서 이들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음.
 - 또한, 퇴원 후 소년원의 소년에 대한 권한은 상실되기에 이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함.
 - 미국 법무성 산하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Juvenile Mentoring Program(JUMP)
- 소년원 퇴소 후 진로문제
 - 소년원 학생들의 퇴소 후,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도록 함.

4. 옴부즈퍼슨 workshop

- 아동과 아동권리,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인권교육 등 세 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또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역할,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제2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위촉 및 활동

1.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

- 본 사업에서는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 16명과 아동 10명을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였음.
- 이들은 2008년 12월(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 시)까지 국내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 및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임.

2.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역할

□ 옴부즈퍼슨의 역할

- 아동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실패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실패에 대해 개선할 조치를 제안함
-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관련 법, 정책, 서비스 등의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함.
-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으며, 협약의 어떤 내용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함.
-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가능케 함.

3. 아동권리모니터링 실태

□ 어른들이 보는 아이들

— 유치원생의 생활을 관찰한 옴부즈키드의 지적

-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수치심
- 물건을 구입할 때, 어리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사례

- 유치원에서 단체로 옷을 갈아입거나 씻는 경우 아동들은 수치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입장을 배려해야 함.
-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상점(문방구,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 아동의 요구는 무시되거나 종종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 논의 및 조치방안

- 관련 옴부즈퍼슨과 개선방안 협의
- 보다 더 자세한 자료 확보(사진 등)
- 여성가족부에 시정조치 협조공문 발송 예정
- 향후 옴부즈퍼슨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 아동의 학교에서의 핸드폰 사용규제와 압수 관행

— 학교 내의 핸드폰 사용을 규제할 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규정해야 함.

-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사 임의의 ‘압수 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하고, 그 대안으로 학칙 또는 선도규정의 생활평점 마이너스 적용 등으로 대체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 하에 단위학교에게 핸드폰 강제 압수관행을 금지

- 압수하지 않고 선도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해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의무이행 강화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은 일정한 자들에게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의 2는 신고의무자들이 그 자격취득 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사례

- 친부(親父)로부터 2004년부터 약 2년간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아동이 2006년에서야 주민들의 신고로 외부와 아동보호단체에 알려졌음에도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후에도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개선방안 건의

-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자격취득 시에만 하는 것은 부족함.
- 분기별 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또한 학대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신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보호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 등에서 벗어나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됨.

□ 교육적 방임(의무교육 미이수) 아동의 발생예방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에 자녀의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개선방안 건의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에 교육적 방임이 추가되어야 하며, 정규학교 및 대안학교 과정 또는 구체적인 교육일정에 따라 공부를 시키는 홈스쿨링 가정은 제외하고 전혀 교육에 임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피학대 아동의 권리보장 및 친권개입

— 부산지역 아동보호센터의 현 상황을 관찰한 음부즈키드의 문제제기

- 상당수의 아동학대 및 유기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대받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과 위협보호자를 분리·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친권개입 관련 법률 검토
 - 아동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 친부모에 의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친권의 문제 때문에 피해아동을 가정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의하면(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등), 친권에 의해 미성년자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 측면에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실효성이 없어 친권상실선고나 친권행사의 제한이 어려움.
- 논의 및 조치방안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심층 논의 예정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향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전체 회의 안건 상정

□ 소년원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 소년원 아동들의 인권문제를 관찰한 옴부즈키드의 문제제기
 - 소년원 내 아이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출소를 위해 소년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소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범죄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재소할 시 청소년들의 심리상태 및 치료를 강화하여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조치 및 계획
 - 2007년 1월 17일 센터장과 옴부즈키드 2인의 소년원(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과 관계자 면담 등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의 소년원 방문계획 설정

□ 고무줄 등·하교시간

-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 내의 학급별 학생 등교시간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되고 있음.

- 학교에서 정한 등교시간은 일정한 데 반해(예: 오전 8시30분 등) 담임교사가 학급 별로 임의 지정하는 등교시간 당기기 또는 하교시간 늦추기 등으로 인해 종종 이를 위반하여 지정되고 있는 형편임.
-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적게는 10분부터 많게는 30분, 1시간 일찍 학생들을 온갖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기등교하게 하는 행태가 일반화되어 있음.
-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교에서 정한 등교시간을 준수해도 하루 6~7시간을 공부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담임재량으로 더 일찍 등교 또는 늦게 하교하게 할 경우 수면시간 단축, 아침식사 결식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개선방안 건의

- 학생의 등·하교시간 운용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규정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담임교사의 ‘고무줄 등하교 시간 남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가 단위학교에게 이에 대한 강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시정권고 및 감사를 실시해야 함.

□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근거마련 필요

- 가정위탁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가정위탁지원법률의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함.
- 위탁보호사업의 5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아동, 지방자치단체, 친부모, 위탁부모, 센터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
- 가정위탁 우선 보호조치 규정
- 위탁가정의 사후관리와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마련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아기별, 반짝임 뒤 눈물

— 아역배우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 또래 친구들과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역배우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유년기

를 투자하기에 교육이나 성장발육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됨.

— 외국의 사례

- 외국의 경우, 아역배우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제시되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역배우 관련 법조항은 물론이거니와, 아역배우들의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전무한 실정임.

— 한국의 사례

-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역연기자들의 계약은 부모 혹은 보호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의 의사보다 근무조건(계약금 등)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아역배우들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음.
- 교육적 측면에서는 무리한 방송스케줄로 정상적인 교과과정 이수 불가능함.
- 신체적 측면에서는 불규칙한 촬영스케줄, 성인과 차별 없는 메이크업, 조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심리적 압박감 측면에서는 촬영장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아역배우들 심리적 위축

□ 우리는 한(恨)민족, 우리는 한(限) 민족

— 새터민 청소년들의 교육 현황

- 새터민들은 정보기관에서 조사 후, 통일부 새터민 정착지원센터인 하나원에서 2개월간 초기 정착 교육을 받음.
- 영구 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살게 됨.

— 문제점 및 개선점

- 2개월간 집단생활 후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진학지도는 거주지 보호담당관, 직업지도는 취업보호 담당관이 도와주고 있으나, 새터민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지식이 부족함
- ‘새터민’과 ‘청소년’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이 심리적 불안감 및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적극 마련이 시급함.
- 대중매체에서 새터민을 희화화하는 과정에 대해 규제 필요
- 상호간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남한 청소년의 통일 교육 확대 및 북한청소년에 대

한 인식 전환 필요

— 기대효과

-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 및 압박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새터민 청소년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진학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진학을 상승은 물론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무연고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경제관 확립 및 무분별한 소비를 줄일 수 있음.

— 예상 문제점 및 장애 요인

- 하나원 내 교육시스템 및 체계에 대한 내부 접근이 어려울 것임.
- 남한 청소년의 통일에 관한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
- 새터민 청소년을 기점으로 TV에서 왜곡되고 있는 청소년의 이미지 및 남북문화 차이,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제하기 어려움.

□ 미니게임기로 얼룩진 아이들의 사회

— 미니게임기 관련 현황

- 문화관광부에서 싱글 로케이션 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니게임기는 건물 외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음.
- 뽑기 게임기에서 뽑히는 상품들은 눈알 장난감, 꼬마수갑, 전기 충격기 등 다소 선정적이고 위험한 제품들이 주를 이룸.
- 도박성이 있는 게임기의 경우, 통제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침.

— 개선점

- 각 지역의 경찰은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
- 뽑기 게임기의 상품에 대한 기준과 규제 마련 필요
- 학교에 설문조사 의뢰, 중독인 아이의 경우 인터넷게임 중독과 같이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요구

— 기대효과

-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 사전 방지
- 위험지대에 몰려 게임하지 않는다면, 사고량 및 위험수치 감소
- 뽑기 상품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 사전 방지

- 미니 게임기 유해감시단 및 테스터들의 활동으로 안전하고 유익하게 게임을 즐기는 태도 고양, 위험성 인식
- 예상 문제점 및 장애 요인
 - 문방구, 서점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운영 및 설치 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미니게임기 업체들 역시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것임.

□ 장애아동의 교육환경

- 현황
 - 장애인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6년 9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되었음.
 - 공통적으로 3~5세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거부로 인한 3~5세 장애아동은 물론 8~18세의 의무대상 장애아동들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
 - 이에 정부의 지방자치기관에 대한 2006년 9월 개정안의 활용여부 감사요청을 비롯한 지역 장애아동 교육 환경상태의 진단, 그리고 장애아동대상의 교육권 찾기 홍보 활동(개정안발표에 대한 홍보)을 요청하는 바임.
- 관련법률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 장애인복지법 제18조(교육), 제19조(직업재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제13조(차별의 금지), 제15조(통합교육)
- 기대효과
 - 장애아동 및 학부모의 합당한 교육권 요구로 인한 장애아동 대상 교육환경의 양·질적 증가
- 예상되는 문제점
 - 대다수의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소극적 활동
 - ‘일만 벌리고 관리 안하는’ 정부의 안일한 관리태도

제3절 ombudsman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조사목적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아동권리ombudsman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조사방법

- 조사는 2007년 5월에 ombudsman 16명, ombudsman 1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음.

조사내용

- ombudsman의 설문지 내용은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운영에 관한 조사, 그리고 앞으로 아동권리ombudsman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사로 구성하였음.
 - 또한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각 항목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음.
- ombudsman의 설문지 내용은 활동에 대한 만족도, 활동의 즐거움, 참여 이유, 자신의 의견에 대한 기대도,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참여의욕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회수결과

- 설문지는 ombudsman 16명 중 11명, ombudsman 10명 중 2명으로부터 회수되었음.

2. 조사결과

ombudsman 조사결과

- 센터와 ombudsman 활동에 대한 만족도
 - 센터와 ombudsman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1명 중,

‘만족’이 2명, ‘보통’이 3명, ‘불만족’이 6명으로 나타났음.

— ombudsman의 인원

- 현재의 ombudsman의 인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 5명, ‘아니오’ 5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났음.

— ombudsman의 구성

- 현재 아동권리와 관련한 학계와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ombudsman의 구성은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 ‘예’는 6명, ‘아니오’는 4명, 무응답자는 1명으로 집계되었음.

— 전체회의 횟수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회의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는 ‘월 1회’는 4명, ‘안전이 있으면 수시로’가 2명, ‘간사회를 조직해서 회의 횟수를 조정’이 2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음.

— 활동보고서를 통한 모니터링 방법

- 설문응답자 11명 모두가 ombudsman 활동에 있어서 활동보고서 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활동보고서 작성 외에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담당행정기관과의 대화 등’이 4건으로 가장 많았음.

— ombudsman 활동의 과제

- 앞으로의 ombudsman의 활동에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ombudsman의 운영 규칙 마련’ 6건과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7건으로 가장 많았음.

— 아동권리ombudsman 제도의 정착

- 아동권리ombudsman 제도의 정착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현장조사권 등의 법적권한 명시’가 5명으로 가장 많았음.

— 아동권리ombudsman 제도의 상설기구화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독립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자유의견 기술

- 현 상태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정책과제 수행 중의 임시적인 기구이므로 상설

조직화를 위한 관련법 및 운영규칙 등의 신속히 마련해야함.

- 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청소년은 물론 국민과 함께 하는 옴부즈 활동이 필요하며, 명망가 위주의 활동은 곤란함.
- 옴부즈맨에 대한 분명한 업무나 활동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센터의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아동권리침해 모니터링을 사회전반에 확대·실시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함.
- 옴부즈맨의 개인보고서는 월 1회로 의무화하고, 보고서의 타당도 검토 후 입법, 조사, 권고 등 시행조치를 실시해야 함.
- 옴부즈맨의 역할을 강조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옴부즈키드 조사결과

— 옴부즈키드 활동에 대한 만족도

- 옴부즈키드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과 ‘매우 만족’이 각각 한명씩 있었음.

— 옴부즈키드 활동의 즐거움

- 옴부즈키드 활동에 대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와 ‘조금 느끼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한명씩 있었음.

— 옴부즈키드의 활동참여 이유

- 옴부즈키드 활동에 참여한 이유에 대하여 ‘활동을 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의 사회에 불만이 많으니까’ 등이라고 응답하였음.

— 자신의 의견에 대한 기대도

- 자신들의 의견이 권리실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예’와 ‘아니오’로 답한 응답자가 각각 한명씩 있었음.

—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참여의욕

- 앞으로의 옴부즈키드 활동에의 참여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각각 1명씩이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였음.

- 자유의견기술
 - 옴부즈키드의 건의사항으로는 문제제기 만이 아닌 자신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 둘 것을 요청하였음.
 - 그 방식은 on-line이든 off-line이든 무관하다는 의견이었음.

3. 시사점

□ 옴부즈맨 응답결과의 시사점

- 옴부즈맨은 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던 점에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에 대한 조건정비나 예산 등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옴부즈맨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옴부즈맨의 인원과 구성에 대한 제고로 옴부즈퍼슨의 인원과 구성은 제도운영과 관련한 조건정비의 일환으로 검토되어야 함.
- 전체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함.
- 모니터링방법이 제고로 전체회의 등을 통해 앞으로의 모니터링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옴부즈맨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함.
- 옴부즈퍼슨제도의 상설기구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옴부즈키드 응답결과의 시사점

- 옴부즈키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사정으로 옴부즈키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편이 필요함.

제4절 모니터링 종합 및 정책제언

□ 정책제언

- 모니터링 방법에 있어서 현장조사나 담당행정기관과의 대화 등 보다 현실적인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운영규칙이 마련되어야 함.

-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옴부즈키드의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가 아동권리실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의욕을 가진 아동을 확보해야 함.
- 옴부즈키드의 회의운영에 있어서도 아동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옴부즈맨과 옴부즈키드의 활동을 분명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제6장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제1절 ‘아동의 매매,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1. 일반원칙(GENERAL GUIDELINES)

- 일반원칙은 11개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음.

2. 현황자료(DATA)

- 8개의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3. 예방조치(PREVENTION)

예방의식 및 노력(Preventive Public Concern & Efforts)

- 예방의식 및 노력은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예방중심의 상담(Prevention Counseling)

- 예방중심의 상담은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신고의무(Duty for Report)

-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청소년 참여(Youth Participation)

— 청소년 참여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4. 금지조치(PROHIBITION AND RELATED MATTERS)

형사법 관련(Criminal & Penal Laws)

— 형사법 관련 법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음.

최대·최소 처벌(Maximum & Minimum Penalties)

— 최대·최소 처벌에 대하여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아동음란물 관련 성범죄자(Sexual Offences Relating to Child Pornography)

— 아동음란물 관련 성범죄자에 대하여 4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아동착취(Child Trafficking)

— 아동착취를 하였을 때 처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장기이식 관련(Organ Transplantation)

— 장기이식 관련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시도(Attempt)

— 시도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사법권 및 범죄인 본국 송환(Jurisdiction & Extradition)

— 사법권 및 범죄인 본국 송환에 대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음.

관련 매체의 압수 및 몰수(Seizure and Confiscation of Goods and Proceeds)

— 관련 매체의 압수 및 몰수에 대하여 4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취업제한조치(Imposing Employment Restriction)

— 취업제한조치에 대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음.

성범죄자 공개제도(Registering Sex Offenders)

— 성범죄자 공개제도에 대하여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유해매체의 관리(Handling of Harmful Material for Youth)

— 유해매체의 관리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4. 피해자 보호조치(PROTECTION OF THE RIGHTS OF VICTIMS)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아동중심의 형사조사(Child-focused Criminal Investigation)

— 아동중심의 형사조사에 대하여 4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정보공유 및 아동 사생활 보호(Child Information & Protection of Child Privacy)

— 정보공유 및 아동 사생활 보호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아동피해자 권리의 보장(Ensuring Child Victims' Rights)

— 아동피해자 권리의 보장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신체적, 심리적 치료·회복(Social Reintegra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 신체적, 심리적 치료·회복에 대하여 4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5. 국제지원 및 협력(INTERNATIONAL ASSISTANCE & COOPERATION)

국제협력 및 조정(International Cooperation & Coordination)

— 국제협력 및 조정에 대하여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노력(Governmental & Non Governmental Efforts)

—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노력은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제2절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1. 서론(INTRODUCTION)

— 서론은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2. 제1~7항 관련 정보(INFORMATION RELATING TO ARTICLE 1 TO 7)

Article 1: 아동 무력분쟁 참여 금지 조치(Measure to ensure that children do no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 아동 무력분쟁 참여 금지조치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Article 2: 강제징집(Compulsory Recruitment)

— 강제징집에 대하여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Article 3: 자원입대(Voluntary Recruitment)

— 자원입대에 대하여 8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Article 4: 비정부 군사단체 관련 조치(Rules Relating to Non-Governmental Armed Forces)

— 비정부 군사단체 관련 조치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Article 5: 국내법 및 국제 인권법(National Legislation & Oth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국내법 및 국제 인권법의 주요협약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Article 6: 선택의정서 이행조치(Implementation &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 선택의정서 이행조치에 대하여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 Article 7: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 국제협력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제7장 종합논의 및 제언

□ 향후 아동권리모니터링과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 제언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관련분야 정책자료(재정, 인력, 추진 내용 및 실적 등)가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이 확충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아동권리 관련 현장 조사, 사례분석, 제도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확대가 필요함.
 - 성인 20명, 아동 20명의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16개 시도에 각 1명씩의 아동과 특수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폐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현재 3개 조항에 대한 유보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해당부처의 노력이 긴요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권리이행에 방해가 되는 제도적, 정책적, 실천적 사항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